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신설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92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서식 및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세부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법 19조의5제2항에

따른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법무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고용노동부
5. 해양수산부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19조의5에 따른 계절근로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의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지역조합·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연합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연기관

2.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다만, 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

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 법 제19조의5제4항제1호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담자가 2명 이상일 것

나. 법 제19조의5제4항제2호의 계절근로자의 선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다. 법 제19조의5제4항제2호의 계절근로자의 입국·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라. 법 제19조의5제4항제2호의 계절근로자의 통역·체류·출국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마. 법 제19조의5제4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의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

바.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업무를 수행, 전문기관의 운영인력 확보 등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②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2.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절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구비 여부
2. 재정 건전성
3. 계절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여부
4. 외국인 도입·채류 업무에 대한 수행경력 및 전문성
5.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6. 최근 3년 이내에 제28조의4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업무 지원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운영실적은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 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4(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9조의5제7항에 따른 전문기
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버목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버목 중 “한”을 “한 사람 또는
제19조의5제9항을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
는 행위를 한”으로 하고, 같은 란 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4조
제11호,
법 제94조
제11의2호,

별표 7 제2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 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2호의3		버. 법 제94조 제 11호의2 범칙금 기준액 적용
--	-----------------------------	--	------------------------------------

여 법 제94조제11호의2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	--	--

별표 7 제2호스목을 으목으로 하고, 으목을 즈목으로 하고, 즈목을 츠목으로 하고, 츠목을 크목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8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법 제19조의5제7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의5제7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9조의5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의5제7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19조의5제3 항에 따른 지정기 준에 적합하지 않 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5제7 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	-----------------------	----	-------------	------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2.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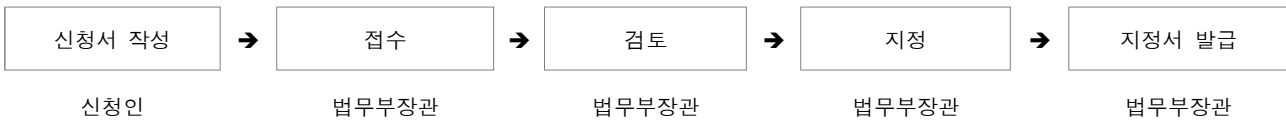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제 호

전문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3. 소 재 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제3항 및 제28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u> <u>구성·운영 등) ① 법 19조의5</u> <u>제2항에 따른 계절근로 정책협</u> <u>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u> <u>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u> <u>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u> <u>구성한다.</u> <u>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u> <u>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u> <u>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u> <u>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u> <u>는 공무원으로 한다.</u> <u>1. 법무부</u> <u>2. 행정안전부</u> <u>3. 농림축산식품부</u> <u>4. 고용노동부</u> <u>5. 해양수산부</u> <u>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u> <u>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u> <u>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u> <u>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u> <u>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u> <u>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u> <u>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u>		

<신 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19조의5에 따른 계절근로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의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지역조합·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연합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지구
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
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
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연기관

2.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요건
을 모두 갖출 것. 다만, 전문기
관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
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
다.

가. 법 제19조의5제4항제1호
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체결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담
자가 2명 이상일 것

나. 법 제19조의5제4항제2호
의 계절근로자의 선발 지
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자가 1명 이상일 것

다. 법 제19조의5제4항제2호
의 계절근로자의 입국·교
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라. 법 제19조의5제4항제2호
의 계절근로자의 통역·체
류·출국 지원 등을 수행
하는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마. 법 제19조의5제4항의 업
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

바.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
램의 운영 업무를 수행, 전
문기관의 운영인력 확보
등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
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
건

②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

관,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2.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절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구비 여부

2. 재정 건전성

3. 계절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여부

4. 외국인 도입·채류 업무에 대
한 수행경력 및 전문성

5.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
행가능성

6. 최근 3년 이내에 제28조의4
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업무
지원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
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
당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
급하고, 해당 사실을 법무부 홈
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는 법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
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운

<u><신 설></u>	<u>영실적은 다음 연도의 1월 31일</u> <u>까지 제출해야 한다.</u> <u>⑦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지</u> <u>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u> <u>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u> <u>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u> <u>정 기준·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u> <u>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u> <u>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28조의4(전문기관의 지정취소</u> <u>등) 법 제19조의5제7항에 따른</u> <u>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u> <u>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u> <u>의2와 같다.</u>
---------------------------	---